

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

전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사업주는,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소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

납세자	<p>전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으로 사업소별로 납세의무 있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개인 :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(소득세법의 총수입금액)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■ 법인 : 사업소를 둔 법인(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·재단 및 단체 포함)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과세표준	<p>과세기준일(7월 1일) 현재의 사업소 및 사업소 연면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소 : 인적(직원) 및 물적(사무소)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(사무)이 이루어지는 장소 ■ 사업소 연면적 : 사업소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(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)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세율	<p>주민세 = 기본세액(5~20만원+지방교육세25%) + 연면적세액(250원/㎡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본세액 : 개인사업자 5만원 / 법인 자본금에 따라 차등 과세 ■ 연면적세액 : 사업소 연면적 330㎡ 초과시에 연면적(㎡) × 250원 납부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 colspan="6">기본세율 (기존 개인사업자·법인 균등분)</th> <th rowspan="4">+</th> <th>연면적 세율</th> </tr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rowspan="2">개인사업자</th> <th colspan="4">법인 (자본금 기준 차등 과세)</th> <th rowspan="2">1㎡당 250원 (오염배출 행정처분 사업소 500원) ※면세점 : 연면적 330㎡ 이하</th> </tr> <tr> <th>30억 이하</th> <th>30억 초과 ~50억</th> <th>50억 초과</th> <th>기타법인</th> </tr> <tr> <th>계</th> <td>62,500원</td> <td>62,500원</td> <td>125,000원</td> <td>250,000원</td> <td>62,500원</td> <td></td> </tr> <tr> <th>주민세</th> <td>50,000원</td> <td>50,000원</td> <td>100,000원</td> <td>200,000원</td> <td>50,000원</td> <td></td> </tr> <tr> <th>지방교육세</th> <td>12,500원</td> <td>12,500원</td> <td>25,000원</td> <td>50,000원</td> <td>12,500원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기본세율 (기존 개인사업자·법인 균등분)						+	연면적 세율	구분	개인사업자	법인 (자본금 기준 차등 과세)				1㎡당 250원 (오염배출 행정처분 사업소 500원) ※면세점 : 연면적 330㎡ 이하	30억 이하	30억 초과 ~50억	50억 초과	기타법인	계	62,500원	62,500원	125,000원	250,000원	62,500원		주민세	50,000원	50,000원	100,000원	200,000원	50,000원		지방교육세	12,500원	12,500원	25,000원	50,000원	12,500원	
기본세율 (기존 개인사업자·법인 균등분)						+	연면적 세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개인사업자	법인 (자본금 기준 차등 과세)					1㎡당 250원 (오염배출 행정처분 사업소 500원) ※면세점 : 연면적 330㎡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30억 이하	30억 초과 ~50억	50억 초과	기타법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계	62,500원	62,500원	125,000원	250,000원	62,5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주민세	50,000원	50,000원	100,000원	200,000원	5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방교육세	12,500원	12,500원	25,000원	50,000원	12,5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관련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방세법 제74조~제84조,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~85조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고납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(위택스 전자신고/ 방문.팩스.우편 신고서 제출) ■ 신고양식 : (위택스) http://wetax.go.kr 지방세정보 - 지방세자료실 -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납세문의	<p>☎ 전주시 완산구청 세무과(063-220-5359), 덕진구청 세무과(063-270-6293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신고납부 예시	개인사업자 A	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천2백만원, 사업소 연면적 420㎡	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천8백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납세의무 없음	☞ 신고대상 아님
	개인사업자 B	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6천만원, 사업소 연면적 100㎡		☞ 신고납부세액 62,500원
		① 기본세액 50,000원 ② 지방교육세(25%) 12,500원	③ 연면적 세액 0원 330㎡ 미만으로 면세	
	개인사업자 C	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6천만원, 사업소 연면적 460㎡		☞ 신고납부세액 177,500원
		① 기본세액 50,000원 ② 지방교육세(25%) 12,500원	③ 연면적 세액 115,000원 (460㎡×250원)	
법인사업자 D	자본금 40억, 사업소 연면적 1,020㎡		☞ 신고납부세액 380,000원	
법인사업자 E	자본금 없는 기타법인, 사업소 연면적 240㎡		☞ 신고납부세액 62,500원	
	① 기본세액(자본금기준) 50,000원 ② 지방교육세(25%) 12,500원	③ 연면적 세액 : 0원 330㎡ 미만으로 면세		



신고 납부기간

8월1일 ~ 8월31일



신고 납부방법

- ①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(위택스)
- ② 우편, 팩스 및 방문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
- ※ 납세편의를 위하여 납부서가 발송되며 기한 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
- ※ **사업소 현행이 다르거나 신규사업소는 신고**

주민세 사업소분이란?

- 과세대상
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
- 과세기준일 : 7월1일
- 납세의무자
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
- 과표 및 세율
 - 과세표준 : 사업소 및 그 연면적
 - 기본세액(5만~20만원)과 연면적세율(250원/㎡)을 합산한 세액
 - ※ 연면적세액은 330㎡ 초과시 납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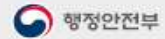
주민세 사업소분 개편

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

주민세 납부 어떻게 바뀌었을까?



미세 단속화된 주민세 사업소분을 월에 만나세요!



주민세 사업소분 개편

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(구)재산분과 (구)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신고분으로 전환하였습니다.

개편 내용

기 조		
세목명	납세의무자	세율
균등분 (8월) 부과	개인	1만원 이하
	개인사업자	5만원
	법인	5~50만원
재산분 (7월)	사업자	250원/㎡ (연면적330㎡ 초과)



개 정		
세목명	납세의무자	세율
개인분(8월)	기준과 동일	
사업소분 (8월) 자진신고	사업자 (개인, 법인)	① 기본세액 + ② 연면적세액 ■ 기본: 5~20만원 ■ 연면적: 면적330㎡ 초과시 연면적(㎡)×250원 ※ 8.31 까지 신고납부

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방법



WETAX를 통한 신고·납부 안내

